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2.7.4>

행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(공원위원회)	10일 (3개월)

신청인	성명		
	생년월일	전화번호	
	주소		

신청내용	자연공원의 명칭	
	행위의 종류	
	행위장소 및 면적	
	행위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)일간
	점용(사용)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)일간
	원상복구방법	

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(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합니다) 2.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. 토지사용승낙서(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등기사항 증명서(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) 2. 건축물대장(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지적도·임야도	

처리절차

[처리기관]

- 국립공원: 환경부
- 도립공원: 시·도
- 군립공원: 시·군·구

※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.

신청서 작성	→ 접수	→ 검토	→ 협의	→ 확인	→ 결재	→ 허가통보
(신청인)	(처리기관)	(관련 법규 및 계획 등 검토)	(타 기관 및 청내 관련 부서 간)	(현지 확인조사)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